

주차장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의안 번호	15412
----------	-------

제안연월일 : 2025. 12.
제안자 : 국토교통위원장

1. 대안의 제안경위

건명	의안번호	발의자	회부일	회의정보	
주차장법 일부개정법률안	2201544	민형배 의원 등 11인	'24.07.10.	상정	제417회 국회(임시회) 제1차 국토교통위원회('24. 8.21)
				소위 심사	제429회 국회(정기회) 제3차 교통법안심사소위('25.11.26)
주차장법 일부개정법률안	2206015	천준호 의원 등 10인	'24.11.29.	상정	제422회 국회(임시회) 제1차 국토교통위원회('25. 2.18)
				소위 심사	제429회 국회(정기회) 제3차 교통법안심사소위('25.11.26)
주차장법 일부개정법률안	2207925	이연희 의원 등 17인	'25.02.07.	상정	제428회 국회(임시회) 제2차 국토교통위원회('25.8.21)
				소위 심사	제429회 국회(정기회) 제3차 교통법안심사소위('25.11.26)
주차장법 일부개정법률안	2212788	정준호 의원 등 17인	'25.09.09.	상정	제429회 국회(정기회) 제6차 국토교통위원회('25.11.18)
				소위 심사	제429회 국회(정기회) 제3차 교통법안심사소위('25.11.26)
주차장법 일부개정법률안	2213970	전용기 의원 등 10인	'25.11.07.	상정	※ 소위원회 직접 회부 ('25.11.21)
				소위 심사	제429회 국회(정기회) 제3차 교통법안심사소위('25.11.26)

제430회 국회(임시회) 제1차 국토교통위원회(2025. 12. 10.)는 위 5건의 법률안을 심사한 결과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국회법」 제51조에 따라 위원회 대안으로 제안하기로 함.

2. 대안의 제안이유

현행법상 무료 공영주차장에서 정당한 사유 없이 장기주차 하는 경우 견인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되어 있으나 지방자치단체의 현실적 여건상 실효성이 미흡하다는 지적과 부설주차장 등의 출입구에 차량을 주차하여 다른 차량의 진출입을 방해하는 행위에 대한 제재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무료 공영주차장에서의 장기주차 금지행위의 적용 범위 및 요건을 확대·강화하고 위반 시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는 한편, 노외주차장 및 부설주차장 출입구에 차량을 주차하여 다른 차량의 진출입을 못하게 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위반 시 과태료 부과 및 지자체장이 견인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주차질서 확립에 기여하려는 것임.

그 밖에 현행법에 도입된 이후 지금까지 시행 실적이 없는 노외주차장 설치제한지역 지정제도를 폐지하여 불필요한 제도를 정비하려는 것임.

3. 대안의 주요내용

가. 누구든지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의 장이 설치한 무료 주차장에서 정당한 사유 없이 1개월 이내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상 계속하여 주차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현행법상 견인 등의 조치 대상을 이에 맞게 정비하며, 위반 시 과태료를 부

과함(안 제6조의3제2항 신설, 안 제8조의2제1항제6호·제15조제2항 제4호·제19조의3제3항제3호 및 안 제30조제2항제1호 신설).

나. 누구든지 노외주차장 또는 부설주차장의 출입구에 자동차를 주차하여 다른 자동차가 해당 주차장에 진출입하지 못하게 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 과태료를 부과함(안 제6조의3 제3항 및 제30조제1항제1호 신설).

다. 지자체장이 노외주차장 설치를 제한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는 현행 규정을 삭제함(제12조제6항 삭제).

라. 지자체장이 설치한 노외주차장에서 주차장 출입구에 자동차를 주차하여 다른 자동차가 진출입하지 못하게 하는 경우 지자체장이 견인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함(안 제15조제2항제5호 신설).

마. 노외주차장관리자(지자체장이 설치한 경우 제외)는 주차장 출입구에 자동차를 주차하여 다른 자동차의 진출입을 못하게 하는 경우 그 운전자 등에게 자동차의 이동 등을 권고하고, 권고에 불응하는 경우에는 특별시장·광역시장, 시장·군수·구청장에게 견인 등의 조치를 요청하며, 요청을 받은 특별시장·광역시장, 시장·군수·구청장이 해당 자동차에 대하여 견인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고, 부설주차장의 경우에는 이를 준용하도록 함(안 제15조제3항부터 5항까지 및 제19조의3제5항 신설).

주차장법 일부개정법률안

주차장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의3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종전의 제목 외의 부분) 중 “공공기관, 그 밖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관의 장”을 “공공기관 및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관(이하 “국가기관 등”이라 한다)의 장”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누구든지 국가기관등의 장이 설치한 주차장으로서 주차요금이 징수되지 아니하는 주차장에서 정당한 사유 없이 1개월 이내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상 계속하여 주차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누구든지 노외주차장 또는 부설주차장의 출입구에 자동차를 주차하여 다른 자동차가 해당 주차장에 진출입하지 못하게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8조의2제1항제6호 중 “주차요금이 징수되지 아니하는 노상주차장에 정당한 사유 없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상 계속하여 고정적으로”를 “제6조의3제2항을 위반하여”로 한다.

제12조제6항을 삭제한다.

제15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다음 각 호의”를 “특별시장·광역시장,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설치한 노외주차장(제4호의 경우에는 국가기관등의 장이 설치한 노외주차장을 말한다)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으로 하고, 같은 항 제4호 중 “주차요금이 징수되지 아니하는 노외주차장에 정당한 사유 없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상 계속하여 고정적으로”를 “제6조의3제2항을 위반하여”로 하며, 같은 항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에 제3항부터 제5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제6조의3제3항을 위반하여 주차장 출입구에 자동차를 주차하여 다른 자동차의 진출입을 못하게 하는 경우

③ 노외주차장관리자(특별시장·광역시장,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설치한 노외주차장의 경우는 제외한다)는 제6조의3제3항을 위반하여 주차장 출입구에 자동차를 주차하여 다른 자동차의 진출입을 못하게 하는 경우에는 해당 자동차의 운전자 또는 관리책임이 있는 자에게 주차방법을 변경하거나 자동차를 그 곳으로부터 다른 장소로 이동시킬 것을 권고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른 권고에도 불구하고 이에 응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노외주차장관리자는 특별시장·광역시장,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제8조의2제2항에 따른 조치를 요청할 수 있다.

⑤ 제4항에 따른 요청을 받은 특별시장·광역시장,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8조의2제2항에 따른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동

차를 이동시키는 때에는 「도로교통법」 제35조제3항부터 제7항까지 및 제36조를 준용한다.

제19조의3제3항제3호 중 “국가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설치한 부설주차장 중 개방주차장이 아닌 주차장에 정당한 사유 없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상 계속하여 고정적으로”를 “국가기관등의 장이 설치한 부설주차장에서 제6조의3제2항을 위반하여”로 하고, 같은 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⑤ 부설주차장에서 제6조의3제3항을 위반하여 주차장 출입구에 자동차를 주차하여 다른 자동차의 진출입을 못하게 하는 경우에는 제15조제3항부터 제5항까지를 준용한다. 이 경우 “노외주차장관리자”는 “부설주차장의 관리자”로 본다.

제30조제1항제1호를 제1호의2로 하고, 같은 항에 제1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제6조의3제3항을 위반하여 노외주차장 또는 부설주차장의 출입구에 자동차를 주차하여 다른 자동차의 진출입을 못하게 한 자 제30조제2항제1호를 제1호의2로 하고, 같은 항에 제1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3항제1호 중 “제6조의3”을 “제6조의3제1항”으로 한다.

1. 제6조의3제2항을 위반하여 주차장에서 정당한 사유 없이 계속하여 주차한 자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주차 중인 자동차의 주차기간 산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제6조의3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국가기관등의 장이 설치한 주차장으로서 주차요금이 징수되지 아니하는 주차장에 주차 중인 자동차에 대하여 제6조의3제2항, 제8조의2제1항제6호, 제15조제2항제4호 및 제19조의3제3항제3호의 개정규정에 따라 주차기간을 산정하는 경우에는 이 법 시행일부터 주차한 것으로 본다.

신·구 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6조의3(주차장에서의 금지행위)</p> <p>누구든지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u>공공기관</u>, 그 밖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관의 장이 설치한 주차장에서 야영행위, 취사행위 또는 불을 피우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p> <p><u><신 설></u></p>	<p>제6조의3(주차장에서의 금지행위)</p> <p>① ----- ----- ----- <u>공공기관</u> 및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관(이하 “국가기관등”이라 한다)의 장----- ----- -----.</p> <p>② 누구든지 국가기관등의 장이 설치한 주차장으로서 주차요금이 징수되지 아니하는 주차장에서 정당한 사유 없이 1개월 이내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상 계속하여 주차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p> <p>③ 누구든지 노외주차장 또는 부설주차장의 출입구에 자동차를 주차하여 다른 자동차가 해당 주차장에 진출입하지 못하게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p>
<p><u><신 설></u></p>	

<p>제8조의2(노상주차장에서의 주차 행위 제한 등) ① 특별시장·광역시장,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자동차의 운전자 또는 관리책임이 있는 자에게 주차방법을 변경하거나 자동차를 그 곳으로부터 다른 장소로 이동시킬 것을 명할 수 있다. 다만, 「도로교통법」 제2조제22호에 따른 긴급자동차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p>	<p>제8조의2(노상주차장에서의 주차 행위 제한 등) ① -----</p>
<p>1. ~ 5. (생략)</p>	<p>-----.</p>
<p>6. <u>주차요금이 징수되지 아니하는 노상주차장에 정당한 사유</u></p>	<p>1. ~ 5. (현행과 같음)</p>
<p><u>없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상 계속하여 고정적으로</u></p>	<p>6. <u>제6조의3제2항을 위반하여</u></p>
<p>주차하는 경우</p>	<p>-----</p>
<p>② · ③ (생략)</p>	<p>② · ③ (현행과 같음)</p>
<p>제12조(노외주차장의 설치 등) ①</p>	<p>제12조(노외주차장의 설치 등) ①</p>
<p>~ ⑤ (생략)</p>	<p>~ ⑤ (현행과 같음)</p>
<p>⑥ <u>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u></p>	<p><삭 제></p>
<p><u>시장은 노외주차장을 설치하면 교통 혼잡이 가중될 우려</u></p>	

가 있는 지역에 대하여는 노외주차장의 설치를 제한할 수 있다. 이 경우 제한지역의 지정 및 설치 제한의 기준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제15조(관리방법) ① (생 략)

②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제8조의2제2항 및 제3항을 준용한다.

1. ~ 3. (생 략)

4. 주차요금이 징수되지 아니하는 노외주차장에 정당한 사유 없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상 계속하여 고정적으로 주차하는 경우

<신 설>

제15조(관리방법) ① (현행과 같음)

② 특별시장 · 광역시장, 시장 · 군수 또는 구청장이 설치한 노외주차장(제4호의 경우에는 국가기관등의 장이 설치한 노외주차장을 말한다)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1. ~ 3. (현행과 같음)

4. 제6조의3제2항을 위반하여-----

5. 제6조의3제3항을 위반하여 주차장 출입구에 자동차를 주차하여 다른 자동차의 진출입

<신 설>

을 못하게 하는 경우

③ 노외주차장관리자(특별시장 · 광역시장, 시장 · 군수 또는 구청장이 설치한 노외주차장의 경우는 제외한다)는 제6조의3 제3항을 위반하여 주차장 출입구에 자동차를 주차하여 다른 자동차의 진출입을 못하게 하는 경우에는 해당 자동차의 운전자 또는 관리책임이 있는 자에게 주차방법을 변경하거나 자동차를 그 곳으로부터 다른 장소로 이동시킬 것을 권고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른 권고에도 불구하고 이에 응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노외주차장관리자는 특별시장 · 광역시장, 시장 · 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제8조의2 제2항에 따른 조치를 요청할 수 있다.

⑤ 제4항에 따른 요청을 받은 특별시장 · 광역시장, 시장 · 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8조의2제2항에 따른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동차를 이동시키

<신 설>

제19조의3(부설주차장의 관리방법 등) ① · ② (생략)
③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8조의2제2항에 따른 조치를 취할 수 있다.

1. · 2. (생략)
3. 국가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설치한 부설주차장 중 개방주차장이 아닌 주차장에 정당한 사유 없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상 계속하여 고정적으로 주차하는 경우

④ (생략)

<신설>

는 때에는 「도로교통법」 제3조제3항부터 제7항까지 및 제36조를 준용한다.

제19조의3(부설주차장의 관리방법 등) ① · ② (현행과 같음)
③ -----

--.

1. · 2. (현행과 같음)
3. 국가기관등의 장이 설치한 부설주차장에서 제6조의3제2항을 위반하여 -----

④ (현행과 같음)

⑤ 부설주차장에서 제6조의3제3항을 위반하여 주차장 출입구에 자동차를 주차하여 다른 자동차의 진출입을 못하게 하는 경우에는 제15조제3항부터 제5항까지를 준용한다. 이 경우 “노외주차장관리자”는 “부설주

<p>제30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p>	<p><u>차장의 관리자”로 본다.</u> 제30조(과태료) ① ----- ----- ----- -----.</p>
<p><u><신 설></u></p>	<p><u>1. 제6조의3제3항을 위반하여 노외주차장 또는 부설주차장의 출입구에 자동차를 주차하여 다른 자동차의 진출입을 못하게 한 자</u></p>
<p>1. (생 략) 2. • 3. (생 략)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p>	<p><u>1의2. (현행 제1호와 같음)</u> 2. • 3. (현행과 같음) ② ----- ----- -----.</p>
<p><u><신 설></u></p>	<p><u>1. 제6조의3제2항을 위반하여 주차장에서 정당한 사유 없이 계속하여 주차한 자</u></p>
<p>1. (생 략) 2. • 2의2. (생 략) 3. • 4. (생 략) 4의2. ~ 4의6. (생 략) 5. • 5의2. (생 략) 6. (생 략)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p>	<p><u>1의2. (현행 제1호와 같음)</u> 2. • 2의2. (현행과 같음) 3. • 4. (현행과 같음) 4의2. ~ 4의6. (현행과 같음) 5. • 5의2. (현행과 같음) 6. (현행과 같음) ③ ----- ----- -----.</p>

<p>1. <u>제6조의3</u>을 위반하여 주차장 에서 야영 행위, 취사 행위 또 는 불을 피우는 행위를 한 자</p> <p>2. ~ 4. (생 략) ④ (생 략)</p>	<p>1. <u>제6조의3제1항</u>----- ----- -----</p> <p>2. ~ 4. (현행과 같음) ④ (현행과 같음)</p>
--	---